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(부승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692 발의연월일: 2024. 8. 9.

발 의 자:부승찬・임오경・위성락

윤종군・박 정・진선미

황정아 • 이기헌 • 한민수

정을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(Ex-ante Impact Assessment)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(Ex-post Impact Assessment)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6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법률안 또는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한 입법영향분석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직무) 입법조사처는 입법	제3조(직무)		
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			
의 사무를 처리한다.	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<신 설>	6.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		
	구하는 법률안 또는 시행 중		
	인 법률에 대한 입법영향분석		